[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국심2006서3194 (2007.04.04)

[전심번호]

[제목]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저축성 보험료로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보장성보험료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는 임원급여로 보 아 손금산입하며, 나머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 ○○세무서장이 2006.9.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8,437,800원, 2002사업연도 10,667,550원, 2003사업연도 9,916,930원, 2004사업연도 9,197,760원, 2005사업연도 7,884,4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9,018,493원 중 95,098,133원을 김○○에게, 23,920,360원을 한○○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 1. 청구법인이 김○○과 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 2001~ 2005 사업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119,018,493원 중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약환 급금에 상당하는 62,735,487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예치보험료)으로 계상하 도록 하고
- 2.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 56,238,006원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 801,000원은 임 원에 대한 급여(김○○ 507,000원, 한○○ 294,000원)로 보아 손금산입하며
- 3. 그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 55,482,006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 4.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각 금액의 내역은 <별지1>참조)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류도매법인으로 2000.12.27과 2001.12.22.에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이사 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1~2005사업연도에 총 119,018,493원의 보험료(김○○ 95,098,133원, 한○○ 23,920,360원이며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상해·생명보험이므로 쟁점보험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6.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8,437,800원, 2002사업연도 10,667,550원, 2003사업연도 9,916,930원, 2004사업연도 9,197,760원, 2005사업연도 7,884,4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19,018,493원을 소득의 귀속자에

게 상여처분(김○○ 95,098,133원, 한○○ 23,920,360원)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요 임원이 재직기간 중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그 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그 수익자를 법인으로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청 예규 서면2팀 -1631,2006.8.28. 참조)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소멸되는 부분의 보험료 중 해당 임원의 주주총회 승인 급여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만 손금산입하도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을 임원의 근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쟁점보험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생명보험이고, 또한 종신보험으로서 사실상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에 해당되므로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 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 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대한 보험료등
-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27.과 2001.12.22.자로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 ○ ○ ○ ○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계약내역확인서」 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가입내역 및 보장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무배당 종신보험 가입내역(2006.4.1. 현재)

							보험사고시 (또는 만기시)				
보험종류			사망시	월보험료	중도해약시		상해.입원		사망시(또는 만기시)		
(-1) 01-01-11	계약자	피보험자	ا (د (۱ م	(101311)						만기	수익자
(계약일자)			수익자	(10년납)	해약환급금	수익자	부금	수익자	사망시	취기기	(11) 2) (1) 2))
										환급금	(만기일자)
종신보험①		김ㅇㅇ					재해		일반 2억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1,072천 원	38,755천원	청구법인		김ㅇㅇ		2억원	
(2000.12.27)		(대표이사)			ĺ		2억원		재해 5억	, and the second	(2050.12.27)
종신보험②		김ㅇㅇ					재해		일반 1억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626천원	16,211천원	청구법인		김ㅇㅇ		1억원	
(2001.12.22)		(대표이사			,	• • • •	1억원		재해 2억	, –	(2050.12.22)
종신보험③		한ㅇㅇ					재해		일반 2억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493천 원	493천원	청구법인		하ㅇㅇ		2억원	
(2001.12.22)	J I	(이사)	, 1		1		2억원		재해 5악	_ , _	(2070.12.22)

(가) 쟁점보험의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등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내용은 주보험인 종신보험과 특약보험인 재해상해특약 및 재해사망특약으로 주보험인 종신보험과 특약보험인 재해상해특 및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고,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이나, 주보험인 종신보험의 만기일은 각 2050년 12월(김○○) 및 2070년 12월 (한○○)로서 1946년생 (김○○) 및 1966년생(한○○인 피보험자의 나이가 각 104세에 이르는 시점이며, 재해상해특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만기일은 각 2026년 12월 (김○○) 및 2046년 12월(한○○)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각 80세에 이르는 시점인 것으로 보아 주보험료 이외에 특약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대신에 80세 이전에 재해로 인하여 2-6금의 장애상태에 이르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1급의 장애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종신보험금 이외에 특약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보험의 주요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때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제2호에 "보험기간중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7조(해약환급금)에서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계약내역 확인서」및 각 보험별 「보장금액에시표」에도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의 담보를 원칙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생명보험)이나, 쟁점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사실상 저축성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 (다) 또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액의 수익자가 청구법인이고, 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에 따른 보험금액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임원인점으로 보아, 이 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일부는 피보험자인 임원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쟁점보험료의 산정내역과 2001-2005년 중 납입내역 및 각 사업연도말 현재 해약환급금은 <별지1> 기재내용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이 건 보험료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중의법위내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임원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임원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은 변동시마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1조 제1항에 '임원의 급여(상여금포함)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제2조에 '임원의 급여는 다음의 연보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매년 대표이사가 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연도별 임원의 연봉상한액은 아래<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만원)

위: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급기분 승인근거		2000.12.21.자	2001.12.24자	2002.12.20자			
시합기문 	궁인근거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			
임원별	대표이사	150	200	220	220	220	
급여상한액	이 사	80	100	120	120	120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일본의 ○○○주식회사가 지분의 33.34%를 취득하고, 2003. 12.22.자로 이사 1명을 파견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김○○과 한○○는 1999.1.14.자로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중이며, 김○○과 한○○의 2001~2005년도 실제 급여(상여금 포함) 수령내역 및 쟁점보험료를 포함할 경우의 급여수령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순중 및 한왕규의 급여수령내역

(단

	1								
연도별		김ㅇㅇ (대	표이사)		한○○ (이사)				
	775-1	지급급여			7753	지급급여			
	주주총회 승인연봉	급여수령액	쟁점	 합계	주주총회 승인연봉	급여수령액	.쟁점	합계	
		(상여포함)	보험료	19 /기		(상여포함)	보험료		
2001	150,000,000	122,500,000	14,649,880	137,149,880	80,000,000	69,000,000	541,000	69,541,000	
2002	200,000,000	161,000,000	19,931,533	180,931,533	100,000,000	96,000,000	5,808,840	101,808,840	
2003	220,000,000	157,250,000	20,172,240	177,422,240	120,000,000	95,300,000	5,856,840	101,156,840	
2004	220,000,000	154,400,400	20,172,240	174,572,240	120,000,000	89,100,000	5,856,840	94,956,840	
2005	220,000,000	181,600,000	20,172,240	201,722,240	120,000,000	96,900,000	5,856,840	102,756,840	

(5) 법인세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도 중요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 및 19-19....9 참조).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그 수익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자인 임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예치보험금)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수익 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 준 범위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급여지급 기중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국세청 예규 서면2팀-1662, 2006.8.30. 참조)

(6)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이 건 쟁점보험료 119,018,493원 중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 62,735,487원은 사실상 저축성 보험료로서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자산(예치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보장성(소멸성) 보험료 56,283,006원 중 재해상해특약보험료 801,000원(김○○ 507,000원, 한○○ 294,000원은 그 수익자가 임원이고,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위<표3> 참조)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55,482,006원은 그 수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 금액의 내역은 <별지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보험료의 산정내역 및 납입내역 등

(단위:원)

	보	험료 산정내	역	2001~2005년 중 보험료 납입내역						
구분	내역	보험기간	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2001 원	2002 연	2003 년	2004년	2005년	11 /1	
	일반사망	2050.12.27	1,006,000	13,178,880	11,755,653	11,943,360	11,943,360	11,943,360	60,764,613	
	(김ㅇㅇ)	(청구법인)	1,000,000	,	11,100,000	11,545,500	11,545,500	11,545,500	00,101,010	
	재해사망	2026.12.27	6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종신	(김ㅇㅇ)	(청구법인)	, ,	,		. 20,000	.20,000	120,000		
	재해상해	2026.12.27	6,000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보험①	(김ㅇㅇ)	(김ㅇㅇ)	ŕ		,	,	,	,	,	
	합계		1,072,000	13,970,880	12,547,653	12,735,360	12,735,360	12,735,360	64,724,613	
	레아치그그	2050.12.27	연도말	250,848	2,090,400	12,811,472	23,900,240	35,377,072	35,377,072	
	해약환급금	(청구법인)	(당년증분)	(250,848)	(1,839,552)	(10721072)	(11,088,768)	(11,476,832)	აა,ა <i>11,</i> 0 <i>12</i>	
	일반사망	2050.12.22	591,000	644,000	6,963,880	7,016,880	7,016,880	7,016,880	28,653,520	
	(김ㅇㅇ)	(청구법인)	391,000	644,000	0,903,880	7,010,880	7,010,000	7,010,000	20,000,020	
	재해사망	2026.12.22	32,000	32,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568,000	
 종신	(김ㅇㅇ)	(청구법인)	52,000	32,000	504,000	304,000	004,000	304,000	1,500,000	
	재해상해	2026.12.22	3,000	3,000	36,000	36,000	36,000	36,000	147,000	
보험②	(김ㅇㅇ)	(김ㅇㅇ)	·	·		,	,	·		
	합계		626,000	679,000	7,383,880	7,436,000	7,436,880	7,436,000	30,373,520	
	해약환급금	2050.12.27	연도말	0	2,253,600	8,245,672	8,245,672	14,386,106	14,386,106	
	이 다완ㅂㅁ	(청구법인)	(당년증분)		(2,115,254) 4,764,840	(5,992,072) 4,812,840	(5,992,072) 4,812,840	(6,140,434) 4,812,840	19,657,360	
	일반사망	2070.12.22	406,000	454,000						
	(한〇〇)	(청구법인)	400,000	454,000	4,704,040	4,012,040	4,012,040	4,012,040	19,037,300	
	재해사망	2046.12.22	81,000	81,000	972,000	972,000	972,000	972,000	3,969,000	
종신	(김ㅇㅇ)	(청구법인)	01,000							
	재해상해	2046.12.22	6,000	6,000	72,000	72,000	72,000	72,000	294,000	
보험③	(한ㅇㅇ)	(한ㅇㅇ)	,	,	,	,	,	,	,	
	합계		493,000	541,000	5,808,840	5,856,840	5,856,840	5,856,840	23,920,360	
	해약환급분	2070.12.22	연도말	0	493,493	2,403,375	7,588,256	12,972,309	12,972,309	
	,,,,,,,,,,,,,,,,,,,,,,,,,,,,,,,,,,,,,,,	(청구법인)	(당년증분)		(493,493)	(1,909,882)	(5,184,881)	(5,384,053)		
	납입보험료			15,190,880	25,740,373	26,029,080	26,029,080	26,029,080	119,018,493	
합계	해약환급금		연도말계액 (당년중분)	250,848 (250,848)	2,722,239 (2,471,391)	17,468,447 (14,746,208)	39,734,168 (22,265,721)	62,735,487 (23,001,319)	62,735,487	

* 해약환급금은 해약시점의 보험료 납입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10년) 종료시에는 보험료 납입없이 환급율의 증가로 해약환급금만 증 액되어 주보험(일반사망)의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주보험의 보험금액과 동일해짐